

## 「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」

1. 개정시행일: 2016.10.10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장(총칙) ~제2장(서비스 이용계약) &lt;이하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서비스 이용                      제8조~제12조 &lt;이하생략&gt;  <b>제13조(인증방법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지갑비밀번호,뱅크머니PIN, 휴대폰인증, ARS인증, 실명인증, 계좌비밀번호, OTP, 보안카드, 공인인증서 등(이하 “인증수단”이라 합니다)이 이용되며, 인증수단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은행은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고지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최초 발급 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갑비밀번호, 뱅크머니PIN을 등록하여야 하며, 사용 중 뱅크월렛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<u>회원은 인증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④ 인증수단의 오류 입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⑤ 지갑비밀번호, 뱅크머니PIN 분실시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해 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4장 모바일현금카드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~제21조 &lt;이하생략&gt;  <b>제22조(변경, 사고신고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<u>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의 분실·도난,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 <p><b>제23조(면책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&lt;이하생략&gt;</p>	<p>&lt;좌동&gt;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서비스 이용                      &lt;좌동&gt;  <b>제13조(인증방법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②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&lt;삭제&gt;                       ③ 좌동                      ④ 좌동</p> <p>제4장 모바일현금카드                      &lt;좌동&gt;  <b>제22조(변경, 사고신고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“USIM칩 등”의 분실·도난, <u>지갑비밀번호, 계좌비밀번호, OTP, 보안카드, 공인인증서 등 각종 “인증수단”의 누설·노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&lt;좌동&gt;</p> <p><b>제23조(면책)</b>                      &lt;좌동&gt;</p>	<p>(면책내용 준용)</p> <p>호체상                      호체상</p> <p>문구 수정                      (인증수단명확화, 서면외 별도 방법을 추가, 효력시기 구체화 및 삭제함)</p>

<p>③ 회원 이외 제3자의 모바일현금카드 애플릿 위.변조, “뱅크월렛”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p>1. <u>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</u></p> <p>2. <u>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u></p> <p>3. <u>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이하생략&gt;</p> <p>제5장 बैं크머니 제24조~제34조 제35조(변경, 사고신고 등)</p> <p>① <u>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의 분실·도난 및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② &lt;이하생략&gt;</p> <p>제36조(면책)</p> <p>①은행은 회원의 बैं크머니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회원 이외의 제3자의 बैं크머니애플릿 위.변조, “뱅크월렛”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बैं크머니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</p>	<p>③ &lt;좌동&gt;</p> <p>1.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“USIM칩 등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2.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<u>스마트폰 및 “USIM칩 등”</u> 이나 <u>지갑비밀번호, 계좌비밀번호, OTP, 보안카드, 공인인증서 등 각종 “인증수단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, “USIM칩 등”, “인증수단”을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좌동&gt;</p> <p>제5장 बैं크머니 제35조(변경, 사고신고 등)</p> <p>①<u>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“USIM칩 등”의 분실·도난, 지갑비밀번호, 계좌비밀번호, OTP, 보안카드, 공인인증서 등 각종 “인증수단”의 누설·노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.</u>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제36조(면책)</p> <p>① &lt;좌동&gt;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	<p>문구 수정 (제1호,2호 병합)</p> <p>제 2호 삭제</p> <p>호체상(문구수정)</p> <p>문구 수정 (인증수단명확화, 서면외 별도 방법을 추가, 효력시기 구체화 및 삭제함)</p>
--	--	--

<p>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u></li> <li>3. <u>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बैं크머니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칩 등을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</u>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이하 생략&gt;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“USIM칩 등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u> &lt;삭제&gt;</li> <li>2.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<u>스마트폰 및 “USIM칩 등”</u>이나 <u>지갑비밀번호, बैं크머니 PIN, 계좌비밀번호, OTP, 보안카드, 공인인증서 등 각종 “인증수단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, “USIM칩 등”, “인증수단”을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</u> &lt;좌동&gt;</li> </ol>	<p>문구 수정 (제1호, 2호 병합)</p> <p>제 2호 삭제</p> <p>호체상(문구수정)</p>
--	--	-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 : 적용